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슈로더투자신탁산운용(주)'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Schroders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주식 종류형투자신탁 자-(A)

투자신탁명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
자산운용회사명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해외위탁자산 운용회사명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국내원화자산 자문회사명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 전화번호	<p>한국씨티은행 (☎1566-1000, www.citibank.co.kr) 서울시 중구 다동 39 번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02-3702-3939, www.scfb.co.kr)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한국외환은행 (☎02-729-8000, www.keb.co.kr) 서울시 중구 을지로 2 가 181 하나은행(☎1588-1111, www.hanabank.com) 서울시 중구 을지로 1 가 101-1 우리투자증권 (☎ 02-768-7000, www.wooriwm.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하나대투증권 (☎1588-3111, www.hanadaetoo.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증권 서울지점 (☎02-3707-0400) 서울시 태평로 1 가 84 번지 서울파이낸스센터 29 층 HSBC (☎ 1588-1770, www.kr.hsbc.com) 서울시 중구 봉래동 1 가 25 번지 동부증권 (☎ 02-369-3000, www.winnet.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p> <p>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p>
작성기준일	2009년1월
투자설명서 비치·공 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판매회사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schroders.co.kr),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설명서 요약]

요약(핵심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1. 투자신탁의 개요
명칭, 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2.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평균 수익률)
3. 수수료·보수, 과세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2.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3.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이 펀드의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1. 자산운용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관련 사항
2. 판매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3. 수탁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5. 채권평가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제 4 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1.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공시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용어 정리 : 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 참고 > 펀드용어 정리

※ 본문에 기울임체로 기재된 단어들은 투자설명서 마지막의 ‘<참고> 펀드 용어정리’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 (☞ 본문 6쪽)

1. 명 칭 :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78537)
2. 펀드존속기간 : 추가형이어서 별도의 종료일이 없습니다.
3. 종 류 :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주식형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4. 자산운용회사 : 슈로더투자신탁운용(해외위탁운용사: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II 투자정보 (☞ 본문 7~11쪽)

구 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 국가들에 상장 또는 등록된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y) 관련 기업의 주식 등에 자산의 대부분을 운용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중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					
2. 주요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전세계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 국가들에 상장 또는 등록된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y) 관련 기업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펀드에 투자 - 투자신탁재산의 40% 이하를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 -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한 목표 환헤지비율은 편입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원화표시) 금액에 상응하는 미국달러 평가액을 기준으로 80%±20% 수준에서 헤지하되,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운용사의 재량에 따라서 수시 조정이 가능 					
3. 주요 투자위험	- 「 예금자보호법 」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전세계 이머징마켓의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y)관련 주식 등의 가치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으므로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높은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으며, 전세계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의 경제여건 변화와 이 지역에 상장 또는 등록된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y) 관련 기업들의 주식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중장기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간접투자기구(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www.schroders.co.kr)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 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 경력
				운용중인 펀드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김영신	35세	이사	4	0.5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세대 영문학 석사 - '08년 3월 현재 슈로더투신 Multi Asset 펀드 운용
*이 투자신탁은 공동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운용 전문인력 임.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재산에서 해외유가증권 운용을 총괄하는 운용전문 인력 은 투자설명서 본문 참조.						
7.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해당사항 없음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본문 12~18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종 류		지급비율(연간, %)					
		종류 A	종류 C	종류 C-e	종류 I 50억 이상 ~ 100억 미만 개인, 50억 이상 ~ 500억 미만 법인	종류 F	
수익증권 판매 기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온라인 가입고객		기관투자가 등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¹⁾	납입금액의 1.2%	-	-	-	-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10%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보수	운용회사 보수	연 0.90%	연 0.90%	연 0.90%	연 0.90%	연 0.90%
		판매회사 보수	연 1.10%	연 1.70%	연 1.60%	연 0.30%	연 0.05%
		수탁회사 보수	연 0.06%	연 0.06%	연 0.06%	연 0.06%	연 0.06%
		일반사무관리보수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보수합계	연 2.08%	연 2.68%	연 2.58%	연 1.28%	연 1.03%
	기타비용 ²⁾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총보수·비용비율		연2.08%+실비	연2.68%+실비	연2.58%+실비	연1.28%+실비	연1.03%+실비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일회적으로 부과
 주2) 기타비용은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 또는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상품의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설명서 작성일 현재는 신규 상품인 관계로 수치화된 추정치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주3) 모두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기타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과세 : 수익자는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등(2007.1.1. 현재 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세부사항은 본문참조 요함

3. 매입·환매절차 : 이 수익증권의 매입·환매는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에만 가능

구 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이후
매 입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납입 (5시 이전) 수익증권 매입 (D+1 기준가 적용)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납입 (5시 이후) 수익증권 매입 (D+2 기준가 적용)
	환 매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9영업일(D+8) 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청구 (5시 이전) 기준가격 적용 환매대금 지급

※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로 연락주시고,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 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_____ (은)는 (고객 성명) _____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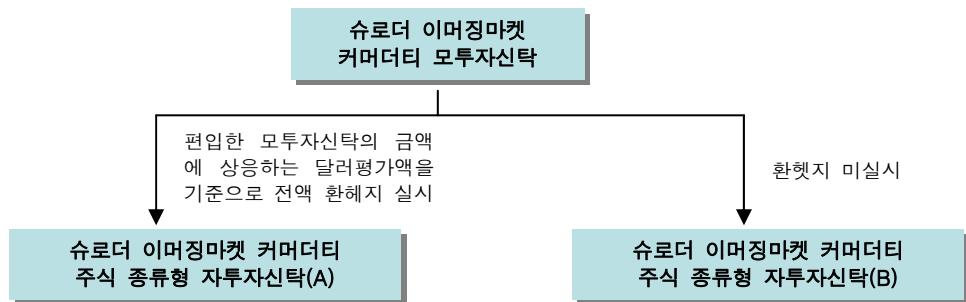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1.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 (펀드코드: 78537)
2. 펀드존속기간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3. 분류 개방형, 추가형, 주식형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 해외위탁 및 국내원화자산 자문 자산운용사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 1) **업무위탁 범위:**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 위탁
 ※ 단, 운용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에 있습니다.
 - 2) **자문업무 범위:** 이 투자신탁의 원화표시 간접투자자산의 투자대상 선정과 관련한 조언, 투자신탁재산을 위하여 투자정책을 조언하고 외국 투자대상지역에 대한 투자정보나 자료를 제공
5. 최초설정일등 연혁 2008년 4월 8일
6. 수탁고추이 해당사항 없음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8. 당해 투자신탁의 모자구조



*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주식 종류형자투자신탁(B)는 환해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변동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한편,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주식 종류형자투자신탁(A)의 경우 편입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원화표시) 금액에 상응하는 미국달러 평가액을 기준으로 80%±20% 수준에서 해지하되,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운용사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운용사가 환해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간접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해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전세계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 국가들에 상장 또는 등록된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y) 관련 기업의 주식 등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여 투자자산의 가치 증대

이 투자신탁은 주로 자산의 대부분을 전세계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 국가들에 상장 또는 등록된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y) 관련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의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비교지수 = Customised MSCI Emerging Market Commodity Index

(슈로더투자신탁(주) 홈페이지(www.schroders.co.kr)에서 전월말 기준 매 월말 비교지수의 변동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말 기준 비교지수의 변동율이란 전월 초 비교지수 대비 전월말 비교지수의 증감분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투자자는 동 펀드의 전월말 기준 수익률 변동율과 비교지수의 변동율을 비교함으로써 매입하신 펀드가 비교지수에 비해 잘 운용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주요투자전략

적극적으로 전세계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 국가들에 상장 또는 등록된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y) 관련 기업의 주식 등에 중장기적으로 투자

-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이라 함은 MSCI 사의 이머징마켓인덱스의 분류기준에 따른 브라질, 러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인도, 대만,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페루 등의 국가 등이 포함되며 수시로 변동이 가능
-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y)라 함은 MSCI 사의 산업별 분류기준에 따른 에너지설비 및 서비스, 석유, 가스, 소비용 연료, 화학, 건설원자재, 유통, 금속 및 광물, 종이 및 목재상품 등의 업종을 대표적으로 의미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함

대부분의 투자자산은 모투자신탁인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주식투자신탁-모’를 통해 투자됩니다. 모투자신탁의 주식포트폴리오는 전세계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 국가들에 상장 또는 등록된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y) 관련 기업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며 나머지 자산을 한국의 국공채, 신용등급 A- 등급 이상의 우량 채권,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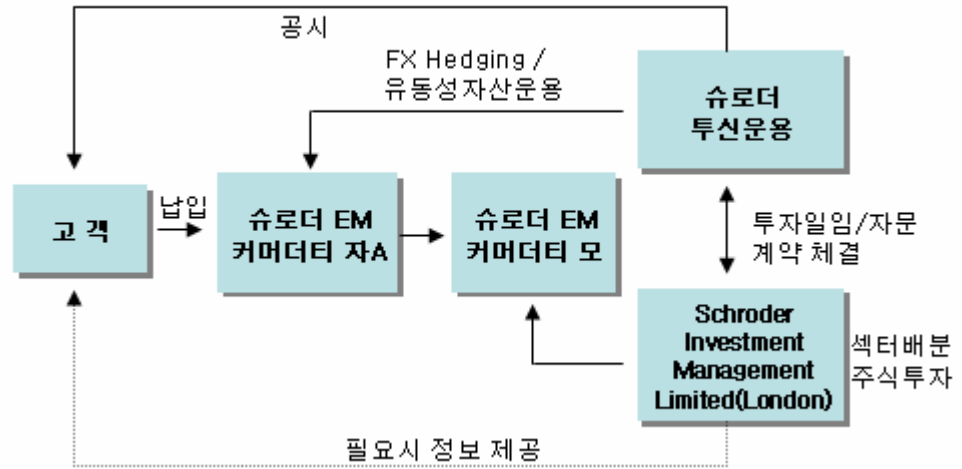
신탁재산의 60% 이상: 전세계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 국가들에 상장 또는 등록된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y) 관련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

신탁재산의 40% 이하: 한국의 국공채, 신용등급 A- 등급 이상의 우량채권,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

모투자신탁에서 투자되는 주식은 해외에서 발행·유통되는 외국 주식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편입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원화표시) 금액에 상응하는 미국달러 평가액을 기준으로 80%±20% 수준에서 헤지하되,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운용사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운용사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간접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이고,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는 2007년 12월에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에 의거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가 담당합니다.



(1) 해외 유가증권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중장기적으로 투자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자, 전세계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 국가들에 상장 또는 등록된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y) 관련 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증서, *주식워런트*, 뮤추얼펀드 등 외국간접투자증권, ETF, 또는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유가증권 예탁증서 등에 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브라질, 러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인도 등을 포함한 이머징마켓 국가들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됩니다.

(2) 국내 유가증권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또는 신용도 높은 우량 은행채에 투자를 하고, 우량은행이 발행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또는 예금에 운용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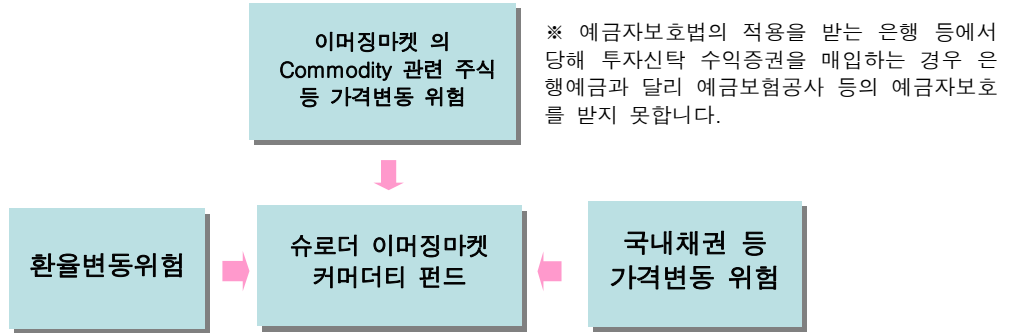
(3) 환위험 관리전략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헤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편입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원화표시) 금액에 상응하는 미국달러 평가액을 기준으로 80%±20% 수준에서 헤지하되,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운용사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선물환,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사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간접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헤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의 기본목적은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18페이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1. 투자전략’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투자위험



(1) 이머징마켓의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y) 관련 주식 등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 국가들에 상장 또는 등록된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y) 관련 기업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성과는 동 주식의 가격변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 국가들의 지정학적 위험 및 해당 국가들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실물상품가격과 연관된 유가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의 국가들에 상장 또는 등록된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y) 관련 기업의 주식 등은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을 말합니다.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입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원화표시) 금액에 상응하는 미국달러 평가액을 기준으로 80%±20% 수준에서 헤지하되,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운용사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운용사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간접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3) 국내 채권등 가격변동 위험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국내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되는데, 금리변동에 따라 동자산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격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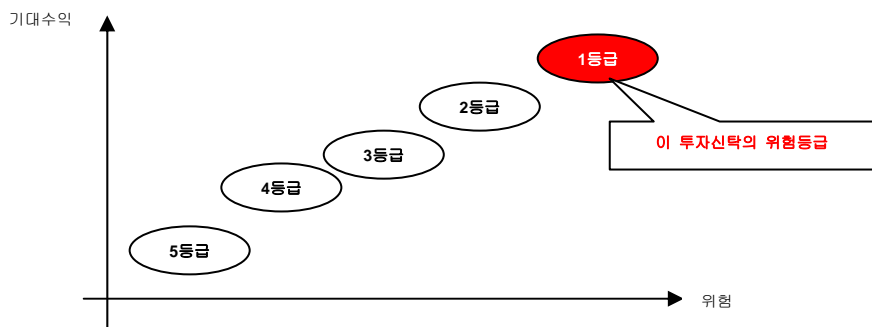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페이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여타 자산보다 변동성이 높은 전세계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 국가들에 상장 또는 등록된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y) 관련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고,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5 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1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이머징마켓의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y) 관련 시장상황 변화와 관련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주식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 투자기간은 3 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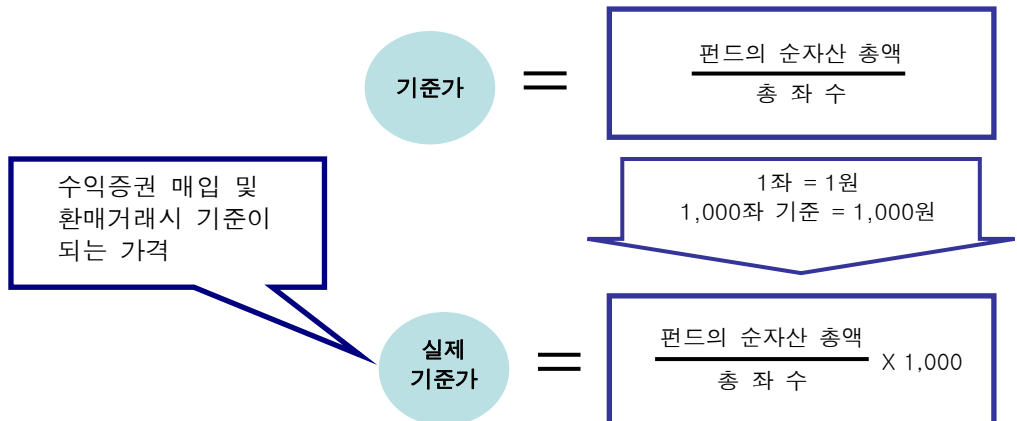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분류



위험등급	자산운용사가 운용중인 투자신탁 상품(예시)
1등급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투자신탁-자(A)
2등급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혼합 종류형투자신탁-자(A)
3등급	슈로더 브릭스 혼합형 투자신탁-자(A)
4등급	슈로더 코리아 채권 투자신탁-자(E)
5등급	-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기준가 산정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증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운용회사(www.schroders.co.kr), 판매회사(www.citibank.co.kr, www.kbstar.com, www.scfb.co.kr, www.keb.co.kr, www.hanabank.com, www.wooriwm.com, www.hanadaetoo.com, www.kr.hsbc.com, www.winnet.co.kr) 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소속부서	직 위	주요 경력 및 이력
김영신	해외 운용팀	이사	- 연세대학교 영문학 석사 - 현 슈로더투신 투자팀 Fund Manager (2008~) 주요 운용펀드 •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08.03~현재) • 슈로더 이머징위너스 ('08.03~현재) • 매트라이프 유럽 ('08.03~현재) 주요 경력 - Citigroup Global Markets Securities, Head of Trading (2000~2005) - KEB Salomon Smith Barney, Equity Sales & Trading (1996~2000) - 협회등록번호: 08-01031-0036

※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해외위탁자산운용 회사의 펀드매니저

성명	소속부서 및 직위	운용중인 자산규모	주요 경력
앨런 콘웨이	이머징 주식시장 총괄	USD 27.4 bn ('07.11.30 현재)	- SISF Emerging Markets fund (2004.11 ~ 현재) - SISF BRICs fund (2005.10 ~ 현재) - SISF Latin American fund (2004.11 ~ 현재)

※ 이 펀드의 해외자산 운용은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의 이머징마켓운용팀이 공동 운용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30페이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1.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

해당사항 없음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비고 (지급시기)
	Class A	Class C	Class C-e	Class I	Class F	
선취 판매수수료	1.2	-	-	-	-	매입시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10%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환매시

* 종류 A,C 수익증권의 수익자: 제한없음

** 종류 C-e 수익증권의 수익자: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고객에 한함

*** 종류 F 수익증권의 수익자: 간접투자기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인세법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8 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100 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500 억원 이상의 법인 고객, 판매회사의 WRAP ACCOUNT,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 변액보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기관투자자

**** 종류 I 수익증권의 수익자: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개인 고객, 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의 법인 고객

2.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비고 (지급시기)
	Class A	Class C	Class C-e	Class I	Class F	
운용회사보수	0.9	0.9	0.9	0.9	0.9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1	1.7	1.6	0.3	0.05	
수탁회사보수	0.06	0.06	0.06	0.06	0.06	
일반사무 관리보수	0.02	0.02	0.02	0.02	0.02	
기타비용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비율	연2.08%+ 실비	연2.68%+ 실비	연2.58%+ 실비	연1.28%+ 실비	연1.03%+ 실비	

1) 기타비용은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 또는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상품의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설명서 작성일 현재는 신규 상품인 관계로 수치화된 추정치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2)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기타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 만원)

구분	1년	3년	5년	10년
Class A	39	97	162	353
Class C	34	106	186	423
Class C-e	33	103	180	410
Class I	19	61	106	242
Class F	17	53	92	210

2.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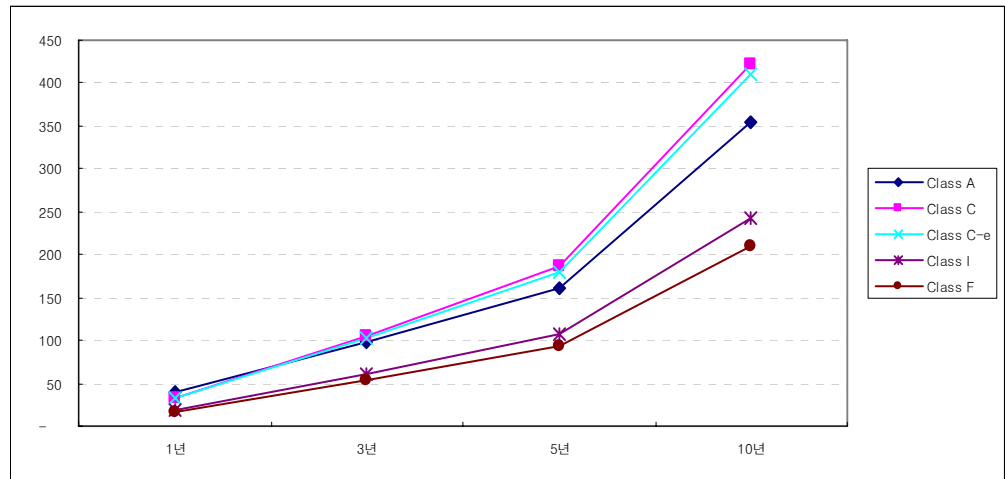
<환매시 클래스 C와 클래스 A 비교표>

	환매 시점	0	1년 경과	2년 경과	3년 경과	4년 경과	5년 경과	10년 경과
Class C	매수금액	10,000,000	10,263,677	10,491,562	10,724,507	10,962,624	11,206,029	12,506,555
	신탁보수		(271,819)	(549,674)	(833,698)	(1,124,028)	(1,420,804)	(3,006,501)
	순투자금액	10,000,000	10,263,677	10,491,562	10,724,507	10,962,624	11,206,029	12,506,555
Class A	매수금액	10,000,000	10,203,129	10,492,562	10,790,204	11,096,290	11,411,059	13,124,012
	선취판매수수료	118,577						
	신탁보수		(209,041)	(424,011)	(645,079)	(872,419)	(1,106,207)	(2,378,472)
	순투자금액	9,881,423	10,203,129	10,492,562	10,790,204	11,096,290	11,411,059	13,124,012
차이	순차액(C-A)	118,577	60,547	(1,000)	(65,697)	(133,666)	(205,030)	(617,458)

주)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투자시 기간별 투자자 부담 비용 추이 >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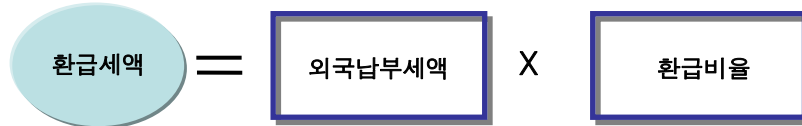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 - 국내비과세소득)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이 >1이면 1, 환급비율이 <0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나)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손실이 더 큰 경우 (∵ 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1) 매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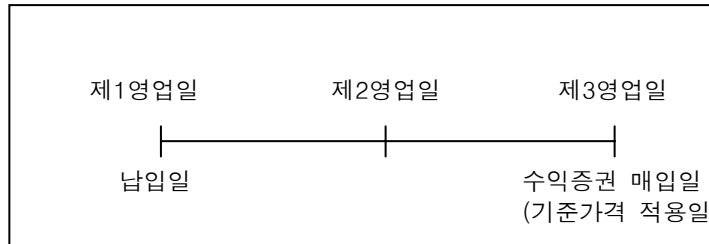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단, 판매사별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판매회사가 주문을 수령한 날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판매회사가 주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27페이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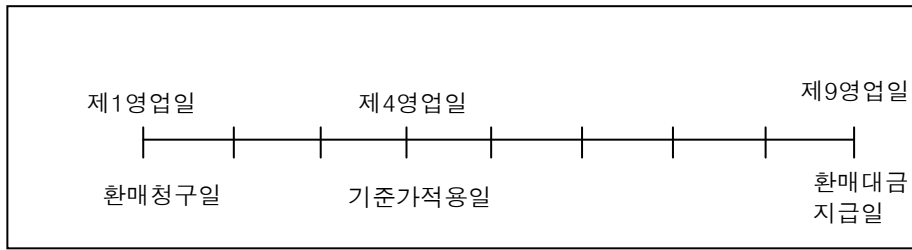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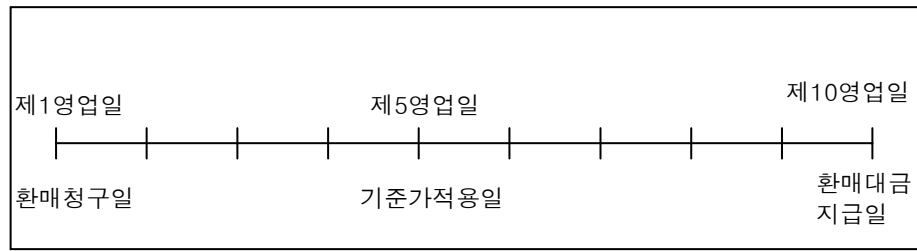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신청한 경우: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지급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신청한 경우: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에 지급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27페이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비고 (지급시기)
	Class A	Class C	Class C-e	Class I	Class F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10%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환매시

*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90일이상(Class A의 경우 30일이상)인 경우 환매수수료가 없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7 시[오후 5 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 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대부분의 투자자산이 모투자신탁인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주식투자신탁-모'를 통해 투자됩니다.

가.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 전세계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 국가들에 상장 또는 등록된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y) 관련 기업의 주식 등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산증식을 추구합니다.
- 초기 주요 투자비중 예시
 - 국가별 투자비중

주요 투자 국가	GEMs Commodities Index 비중	주요 투자 국가	GEMs Commodities Index 비중
브라질	24.3%	폴란드	1.3%
러시아	21.1%	이스라엘	1.1%
중국	13.4%	아르헨티나	1.1%
남아프리카공화국	8.6%	헝가리	0.7%
한국	7.0%	터키	0.7%
인도	6.9%	칠레	0.7%
대만	4.8%	콜롬비아	0.2%
멕시코	2.4%	이집트	0.2%
태국	2.2%	말레이시아	0.2%
인도네시아	1.4%	파키스탄	0.2%
페루	1.4%	모로코	0.1%

* 2007년 12월 기준 운용계획으로 추후 변경될수 있습니다.

- 산업별 투자비중

산 업	GEMs Commodities Index 비중
에너지(Energy)	55.13%
에너지 설비 및 서비스(Energy Equipment & Services)	1.26%
원유, 가스, 소비재용 연료(Oil, Gas & Consumable Fuels)	53.87%
원자재(Materials)	44.87%
화학품(Chemicals)	6.18%
건축재료(Construction Materials)	4.44%
컨테이너 및 포장(Containers & Packaging)	0.22%
금속 및 광업(Metals & Mining)	32.46%
제지 및 임산물(Paper & Forest Products)	1.56%

* 2007년 12월 기준 운용계획으로 추후 변경될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는 투자일임계약에 의거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가 담당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해외운용자 변경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 이와 별도로, 원화표시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을 위하여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를 이 투자신탁의 자문회사로 선정
- 상기의 지역의 국가에 속하는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상향식(Bottom-up) 기업분석 방식에 의한 투자대상 종목을 선정

- 거시적 요소(GDP, 통화 및 이자율 변동 등) 등은 최소한으로 반영
- 다양한 스타일과 섹터에의 투자를 통해 시장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특정 국가, 섹터 및 스타일에 치우치지 않는 운용 방식을 추구
- 독자적인 리서치와 지속적인 사후 밸류에이션 모니터링을 위해 포트폴리오 관리 및 재구성에 노력
- 한편, 통화선물 또는 선물환거래를 통해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에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위험을 일부 헤지할 예정입니다. 헤지 비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내 유가증권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또는 신용도 높은 우량 은행채에 투자를 하고, 우량은행이 발행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또는 예금에 운용될 수 있습니다

환위험 관리전략

통화선물, 통화스왑, 선물환거래 등을 이용하여 환위험의 80%±20% 수준으로 헤지할 수 있으며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운용사의 재량에 따라 적의 조정 가능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대상 해외시장 주식가격의 변동성, 헤지수단 및 헤지 비용등을 고려하여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환헤지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편입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원화표시) 금액에 상응하는 미국달러 평가액을 기준으로 80%±20% 수준에서 헤지하되,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운용사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운용사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간접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는 환헤지의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 투자위험 (1)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해외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동 투자신탁에서 투자할 예정인 해외 주식은 국외 유가증권이므로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는 국제 경제 전망, 환율 변동 등 해외 거시 경제 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될 것입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화표시 유가증권 등은 해당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재량으로 인해 투자신탁이 해당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가치가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환위험 헤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편입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원화표시) 금액에 상응하는 미국달러 평가액을 기준으로 담당 운용전문인력의 재량으로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헤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환위험 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위험 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국내채권 등 가격변동위험	신탁재산의 일부가 국내외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되는데, 금리변동에 따라 동 자산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투자하는 전세계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 국가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위험에 노출됩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옵션매도로 인한 손실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는 투자신탁재산에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매 위험	수익자가 환매요청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수수료는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환매 연기 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에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의 '2.환매관련 유의사항/(3)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사유'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 전세계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의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y) 시장 현황

- 최근 이머징마켓의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y)가격은 상승하였지만,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을 감안시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음
- 개발도상국가(특히 중국 및 인도)에서의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더 큰폭의 상승이 예상됨
-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상승하지만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
- 공급되는 금속은 대부분 소비되고 있지만 재고는 역사적 최저치 수준으로 하락
- 중국과 인도의 경우 전세계 원자재 수요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원자재 소비는 여전히 낮아서 향후 지속적인 원자재 소비 증가 예상

[참고] MSCI EM Index 대비 GEMs Commodities Index 성과 비교



- * Source : Bloomberg, Schroders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2007년12월 기준
- * GEMs Commodities Index는 MSCI EM Energy Index와 MSCI EM Materials Index의 시가총액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출
- * 위 과거 수익비교 그래프는 투자자의 이해를 위한 예시일 뿐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투자대상

* 투자비율은
신탁재산총액에
대비 하여 산출

가. 당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합니다.

- 1)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주식투자신탁-모 의 수익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합니다.
- 2) 헤지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화관련파생상품거래의 선물증거금 납입을 위한 잔존만기 1년 이내의 채권은 투자신탁재산의 5%이내로 합니다.
- 3)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합니다.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4)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나.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1) 외국주식	60% 이상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내지 제 6 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및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유가증권 예탁증서
2) 채권	40% 이하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 이어야 하며 주식관련 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4) 어음	40% 이하	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 2 조의 3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5)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 기준)	15% 이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금리선물, 금리옵션, 통화선물 및 통화옵션
6)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장내파생상품 포함)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파생상품 중 법 제 2 조제 9 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거래되는 상품. 단,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 거래는 헤지 목적에 한함
7) 금리스왑거래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8) 간접투자증권 및 상장지수간 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간접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0 분의 95 이상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외국간접투자증권 또는 간접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0 분의 95 이상이 법시행령 제 164 조 제 1 항제 1 호 가목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국자산에 운용되는 간접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 137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9) 투자증권대여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10) 환매조건부채권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11)투자증권의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2)기타	<p>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30 일 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정됨). <p>추가로 자산운용회사는 법시행령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 재산과의 거래를 할 수 있음.</p>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 내지 7)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을 구성하는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 1) 내지 6)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4. 투자제한 가. 당해 투자신탁

-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77 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통화관련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 1 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 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3) 통화관련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 (4)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단,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은 제 37 조제 1 항제 4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모투자신탁

- (1) 자산운용회사는 모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1.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법 제 2 조제 7 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에 한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법시행령 제 6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채무증서 및 어음, 동 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 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 6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월간 적용한다.
3.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5.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 1 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 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매 1 월이 되는 날 전에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위험평가액'이라한다]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6.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7.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
 8.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2)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II. 자산의 평가

1. 자산의 평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가. 당해투자신탁

-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산정됩니다.

나. 모투자신탁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 국내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의 최종시가
② 비상장주식 또는 비등록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법 제2조 8호에 규정된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 외화 표시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⑦ 외화 표시 자산의 환율 평가기준	자산운용회사가 외화로 표시된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외화를 한국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합니다.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환 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⑧ 기타자산	아래와 같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 - 장외파생상품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 외국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서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비상장 외화표시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외화표시증권에 적용되는 환율을 결정함에 있어, 외화표시상장주식 및 외화표시상장채권에 적용되는 환율의 결정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기준가격 계산 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III.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2.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3 영업일전일 (15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 4 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2) 수익증권의 환매 연기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구체적인 사유는 약관 제 26 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3) 수익증권의 부분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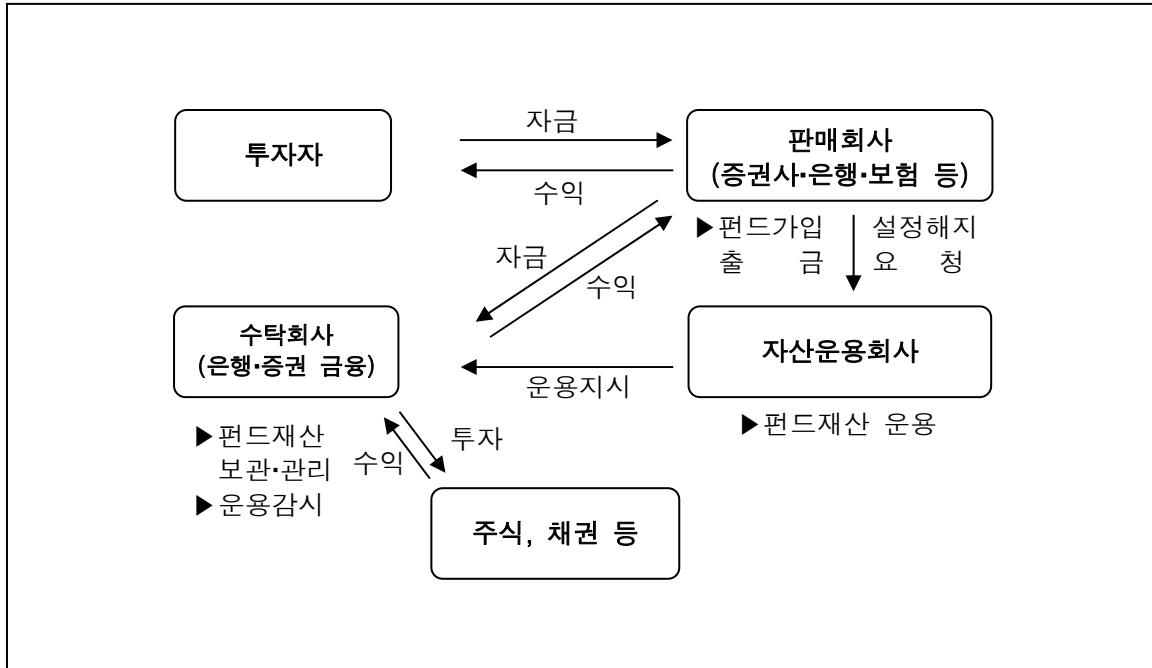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3. 이익분배 등 관련 유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1.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84번지 서울파이낸스센터 15층 (02-3783-0500)
회 사 연 혁	1994.05 슈로더투자신탁 서울사무소 개설 2001.05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설립등기 (납입자본금 100 억원) 2001.07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증권투자신탁운용업 허가 취득 2001.09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증권투자신탁운용업 개시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위탁 및 투자자문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전세계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의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y) 관련 주식 등)에 대한 운용업무는 투자일임계약에 의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London)가 담당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외운용자 변동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

①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의 위탁

- 자산운용회사는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 다음 업무를 위탁합니다.

.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 조사분석업무 / 단순 매매주문업무

②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업무위탁의 책임

-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투자자문의 업무

- 원화표시 간접투자재산 투자대상의 선정과 관련한 조언을 하는 일

- 투자신탁재산을 위하여 투자정책을 조언하고 외국 투자대상지역에 대한 투자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이 투자신탁의 원화자산에 대한 운용은 해외투자자문회사로부터 자산배분 및 매매의사결정과 관련된 조언을 받아 슈로더투신운용(주)가 운용을 담당합니다.

- 기타 위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자산운용회사가 판단하는 업무의 수행

(4)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 투자자문회사 개요

해외위탁 운용사명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Schroders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주요주주	Schroder Administration Limited(100%)
회사 연혁	-1818 : J. Henry Schroder Co. Ltd 설립 -1954 : J. Henry Schroder Co. Ltd의 투자부서 설립 -1959 : 모회사인 Schroders Plc의 상장 -1985.3.7 : Somerled Limited 설립 -1985.6.17 : Somerled Limited에서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로 상호변경
운용자산규모	- \$280.5bn (2007년9월30일 기준)

* 해외위탁운용사 및 자문회사에 대한 위탁운용비용 및 투자자문 수수료는 운용회사 보수에서 지급합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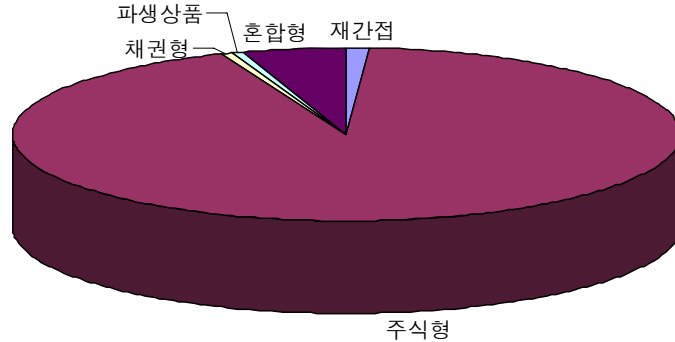
(단위 : 억원)

항 목	요약 대차대조표		항 목	요약손익계산서	
	'06.3.31	'07.3.31		'06.3.31	'07.3.31
유동자산	85	174	영업수익	93	297
고정자산	12	16	영업비용	99	213
자산총계	97	190	영업이익	-6	84
유동부채	14	31	영업외수익	17	18
고정부채	6	3	영업외비용	1	1
부채총계	20	34	경상이익	11	102
자본금	100	100	특별이익		
이익잉여금	-23	-23	특별손실		
자본조정	0	0	법인세		
자본총계	77	156	당기순이익	11	79

4. 운용자산 규모

(단위 : 십억차, 2008.12월말 기준)

종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재간접	실물자산	총계
수탁고	11,106	548	2.7	0	65	0	0	58	0	11,779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 기구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김영민	43세/ 상무	15	10.1 조원	- 부산대 경영학 학사 - 현 슈로더투신 투자팀 Fund Manager <u>주요 운용펀드</u> •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펀드 ('07.08~현재) • 슈로더 이머징위너스 펀드('07.08~ 현재) •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펀드('07.08~ 현재) • AIG VUL 브릭스, 차이나주식형 ('08.02~ 현재) • 라이나 변액유니버설 ('08.02~ 현재) <u>주요 경력</u> • 운용경력 13년 • 한투증권 홍콩현지법인 : Korea Growth Fund 운용자문 및 관리, 외수펀드관리 • 한국투신 : 세계로 해외투자펀드 운용, 한국투신 고유계정 해외투자, 채권부, 국제부 - 협회등록: 07-01031-0035
김영신	35세/ 이사	4	0.5 조원	- 연세대학교 영문학 석사 - 현 슈로더투신 투자팀 Fund Manager (2005~) <u>주요 운용펀드</u> •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08.03~현재) • 슈로더 이머징위너스 ('08.03~현재) • 메트라이프 유럽 ('08.03~현재) <u>주요 경력</u> - Citigroup Global Markets Securities, Head of Trading (2000~2005) - KEB Salomon Smith Barney, Equity Sales & Trading (1996~2000) - 협회등록번호 : 08-01031-0036

김낙균	35세/ 차장	14	1.2 조원	-성균관대 경영학 석사 -현 슈로더투신 투자팀 Fund Manager (2006~) 주요 운용펀드 • 운용경력 7년 • 슈로더 코리아채권 펀드('06.7~ 현재) • 슈로더 신한생명변액유니글로벌이머징 혼합형 펀드('06.12~ 현재) • 슈로더 대한생명변액팬유러피안 펀드('07.7~ 현재) • 아시아 사모채권 펀드('07.2~ 현재) • 슈로더 그레이터차이나혼합형 펀드('07.7~현재) 주요 경력 - Allianz Global Investors 투신 채권운용팀 (2001~2006) - 협회등록번호 : 06-01031-0019
장정주	29세/ 과장	14	2.5 조원	- 서강대학교 경영학 학사 - 현 슈로더투신 투자팀 Fund Manager (2005~) 주요 운용펀드 • 슈로더 차이나그로스 주식형 펀드 ('07.01~현재) • 슈로더 유로주식형 펀드('07.03~현재) • 슈로더 글로벌기후변화 펀드('07.07~현재) • 슈로더 팬유럽주식형 재간접 펀드('06.07~현재) • 슈로더 올인원 재간접 펀드('07.07~현재) • 흥국생명 이머징 유럽 ('08.02~현재) 주요 경력 • 운용경력 3년 - 기업은행 자금운용실 (2003~2004) - 동양선물 (2005) - 협회등록번호: 06-01031-0028

신탁재산운용은 공동운용 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되며, 사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교체할 수 있습니다.(운용자산규모:2007년12월28일 현재)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펀드매니저

펀드 매니저	앨런 콘웨이(Allan Conway)
운용 자산규모	USD 27.4 bn('07.11.30 현재)
과거 운용경력	- SISF Emerging Markets fund (2004.11 ~ 현재) - SISF BRICs fund (2005.10 ~ 현재) - SISF Latin American fund (2004.11 ~ 현재)

주1) 신탁재산운용은 공동운용 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되며, 펀드매니저는 위탁회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씨티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다동 39번지 (1566-1000)
회 사 연 혁 등	설립일 : 1967. 9 자본금 : 13,095 억원 (2005.3)

회 사 명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02-2073-7114)
회 사 연 혁	설립일 : 2001.11.1 자본금 : 16,818억원 (2006.12)
회 사 명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02-3702-3939)
회 사 연 혁 등	설립일 : 1929.07(조선저축은행으로 창립) 2005.09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 행명 변경 자본금 1 조 296 억원, 영업점포 420 개
회 사 명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1 (02-729-8000)
회 사 연 혁	설립일 : 1967. 1. 자본금 : 32,245억원(2004.12)
회 사 명	하나은행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회 사 연 혁	설립일 : 1959. 12. 1 판매회사 등록 : 1999. 7.12
회 사 명	우리투자증권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02-768-7000)
회 사 연 혁	설립일 : 1969. 1. 16 자본금 : 7.868억원 (2005.03)
회 사 명	하나대투증권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1588-3111)
회 사 연 혁	1968. 12.16 한국투자공사 설립 2007. 07. 02 하나대투증권(주)로 사명 변경
회 사 명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증권 서울지점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29층 (02-3707-0400)
회 사 연 혁	설립일 : 1992. 7. 8 자본금 : 222억원
회 사 명	HSBC은행 서울지점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1588-1770)
회 사 연 혁	1984. 서울지점 개설
회 사 명	동부증권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369-3000)
회 사 연 혁	설립일 : 1982. 12. 20 자본금 : 806 억원

2.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환매업무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업무
 각종 장부·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등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2) 판매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 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취득권유인은 법제 57 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책임)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씨티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중구 다동 39 (02-3455-2515)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citibank.co.kr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등

(2) 수탁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수탁회사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아이타스(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02-2168-04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aitas.co.kr

2.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자산운용회사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채권평가	KIS채권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02-3215-14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bond.co.kr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4부. 수익자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둡니다. 이때, 특정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의 요청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수익자 총회 의결 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2. 잔여재산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접투자재산명세서/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 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2)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하나, 간접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 월 이내에 법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약관 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게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신탁약관 제 5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 회 이상 공고

신탁약관 제 49 조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 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장부·서류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1) 수시공시 등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schroders.co.kr), 판매회사(www.citibank.co.kr, www.kbstar.com, www.scfb.co.kr, www.keb.co.kr, www.hanabank.com, www.wooriwm.com, www.hanadaetoo.com, www.kr.hsbc.com, www.winnet.co.kr)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

(2) 의결권 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참고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개방형(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해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 년 10 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 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투자신탁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해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해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 명칭 :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

판 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 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를 제공 받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위험 포함)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환율변동위험 포함)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